

## 용인시 농업용 저수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

제정 2016. 11. 21 훈령 제406호  
일부개정 2021. 4. 15 훈령 제485호(구 및 읍·면·동 순서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26조 및 「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」 제8조, 제9조에 따라 저수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수지는 「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」 제8조에 해당하는 저수지로 하며,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4. 15>

1. 창리 저수지 :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356-3
2. 완장1호 저수지 :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401-1

제3조(용도) 제2조에 따른 저수지(이하 “저수지”라 한다)의 용도는 농업용수의 공급, 홍수 조절 및 그 밖에 해당 저수지의 효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다.

제4조(저수지 관리자 등의 지정) 저수지 관리자는 남사읍장으로 하며, 저수지의 시설관리 실무자는 가급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지정해야 한다. <개정 2021. 4. 15>

제5조(수위측정) 저수지 수위의 측정은 수위표를 기준으로 한다.

제6조(용수공급) ① 저수지 하류에 사용할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 용수의 공급을 위한 용량은 상시 만수위와 저수위표고 사이의 유효저수용량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용수공급은 저수지 용수공급 능력한도에서 공급한다.

제7조(홍수경계체제)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여야 한다.

1. 기상청의 태풍 및 호우주의보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예보가 있

을 때

- 2.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홍수 경계지시가 있을 때
- 3. 그 밖에 홍수발생이 예상될 때

제8조(홍수경계체제 시의 조치) 저수지 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홍수경계체제를 취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기상청 각 관측소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기상 및 강우에 관한 자료 수집
- 2. 최대 유입량, 홍수용량, 홍수계속시간 및 유입량의 시간적인 변화 예측
- 3. 홍수조절 계획의 수위·수문 조작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점검 및 수문 조작을 위한 조치

제9조(사전방류) 저수지 관리자는 제8조 각 호의 조치 결과 사전방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류의 상황을 고려하여 방류량 및 방류개시 시간을 정하여 방류할 수 있다.

제10조(홍수조절) 홍수조절은 제8조제3호의 홍수조절 계획에 따라 홍수조절용량 범위 내에서 한다.

제11조(홍수경계체제의 해제) 저수지 관리자는 홍수경계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저수의 방류)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저수를 방류한다.

- 1. 제9조에 따라 사전방류를 할 때
- 2. 제10조에 따라 홍수조절을 할 때
- 3. 수문의 점검·정비 또는 저수지 내 유지보수를 할 때
- 4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3조(방류 통보) 저수지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방류 때에는 사전에 방류일시, 방류량, 방류시간, 방류에 따라 상승 할 하류지역의 수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(3시간 이내), 앰프방송, 확성기, 경고표식 등으로 알려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제14조(방류 기록) 저수지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저수지 방류를 하였을

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기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
2. 수문가동 및 완료기간, 방류량 및 저수지 수위 변동
3. 저수지 및 저수지 상·하류의 홍수피해, 하상 변동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수문 관리) 저수지 관리자는 제12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수문을 폐쇄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점검·정비) 저수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저수지 시설이 항상 안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·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제당, 수문 및 방수로
2. 관측 경보 및 통신시설
3. 수문조작을 위한 설비
4. 그 밖의 저수지 부대시설

#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4. 15 훈령 제485호, 용인시 구 및 읍·면·동 순서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「용인시 농업용저수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남사면”을 각각 “남사읍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남사면장”을 “남사읍장”으로 한다.

② 생략